

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54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년월일: 2020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송명화, 김정환, 송재혁,
김종무, 봉양순, 김기대,
이광성, 강대호, 김기덕,
신정호, 김상훈, 오현정,
송정빈, 유정희, 이상훈 의원
(15명)

1. 주문

-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담대한 전환 전략인 '서울시 2050 탄소 중립' 실현을 위해,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, 수송 부문의 근본적 전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여 실효성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법률(그린뉴딜 5법)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함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'원전하나줄이기', '2022 태양의 도시, 서울' 등을 추진해 왔으나, 기존 정책만으로는 '탄소 중립'이라는 과감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 시민·전문가와 함께 혁신적인 「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」을 수립·추진하고 있음

- 「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」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, 수송, 에너지, 폐기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정책을 담고 있으며, 전 부문에서 ‘탈탄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’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하고, 발생시킨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생태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80% 감축하고 나머지는 숲 조성 등으로 상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
-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신속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문에 집중하지만 민간까지 탈탄소 사회로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효성을 갖고 지속가능한 추진이 가능할 것임
- 이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, 수송 부문 등의 감축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5개 법률(그린뉴딜 5법)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건의함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,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타사항 : 없음

4. 이송처

- 가. 국회: 환경노동위원회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
- 나. 정부: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

서울특별시의회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전 세계는 기온상승과 폭염, 한파 증가 등 이상 기후에 직면해 있으며,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후반에는 연평균 기온이 4℃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.
- 서울시는 그간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‘원전하나줄이기’, ‘2022 태양의 도시, 서울’ 등을 추진해 왔으나, 기존 정책만으로는 ‘탄소중립’이라는 과감한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 시민·전문가와 함께 혁신적인 감축전략을 수립·추진하고 있다.
- 서울시의 ‘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’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건물, 수송, 에너지, 폐기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정책을 담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80% 감축하고 나머지는 숲 조성 등으로 상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이러한 감축목표와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물, 수송

부문 등의 감축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5개 법률(그린뉴딜 5법)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.

- 첫째,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,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며,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후 가동을 의무화 하기 위해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개정을 촉구한다.
- 둘째,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지도 및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,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개정을 촉구한다.
- 셋째, 수송 부문에서의 ‘탄소 중립’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무공해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「자동차관리법」 개정을 촉구한다.
- 넷째,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금지와 더불어 단계별로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「대기환경보전법」 개정을 촉구한다.
- 다섯째, 전기차 보급 증가 속도에 맞춰 충전시설 구역에서 불법주

차 및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을 촉구한다.

2020. 10. 16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